

#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95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2001. 4. 24.

제 출 자:고 성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○. 임대주택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(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○ 도 세정 13400 - 10184호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표준안

○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제2001 - 70 호(결과, 의견내용 없음)

## 4. 본 문 : 붙임참조

## 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호 중 “전용면적 60제곱미터”를 “전용면적 85제곱미터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전용면적 60제곱미터</u>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한다.</p>	<p>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전용면적 85제곱미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